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706호

발의년월일 : 2021년 12월 7일
발 의 자 : 심광식 의원
찬 성 자 : 이인락, 임준희, 공기환, 이재식, 조진호 의원 (5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13.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다. 특별위원회 규정에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부터 제66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 타

1) 조 례 안 : 별첨

2) 조례안 예고 : 2021. 12. 8. ~ 2021. 12.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회는 법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4조----------. ----------
제7조(특별위원회) ①·② (생 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 ----------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의회는 법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